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2504
등록일자	2015.2.24.
결재일자	2015.2.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도시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정명자	代정명자	고시환	전결 02/24 서명옥		
협조자					

-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

#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9조

현 황

- 금연시설 : 27,240개소 (유치원, 초.중.고교, 음식점 등)
- 금연구역 : 1,136개소 ⇒ 1,146개소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 2015년 추가 지정 : 10개소(강남대로 추가, 지하철역 출입구 9개소)

추진계획

- 2015. 2. 23 :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수립(방침)
- 2015. 2. 23. ~ 3.4 : 금연구역 지정안내 등 홍보물 제작 발주 및 설치
- 2015. 3. 5 : 금연구역 지정 고시(30일 이상)
- 2015. 3. 5 ~ 5. 31 : 금연구역 안내 및 금연 제도
- 2015. 6. 1 ~ : 강남대로 금연구역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 2015. 7. 1 ~ : 지하철 출입구 9개소 주변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 소요예산 : 금20,831,000원(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등 설치)

**강 남 구**  
(보 건 행 정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 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법」 :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및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및 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li>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과태료)</li> </ul>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간접흡연 예방</li> </ul>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li> </ul>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강남구민 전체</li> </ul>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0] [신규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0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①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0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국가 정책으로 타자치구에서도 시행중임.</li> </ul>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및 지하철역(강남·역삼역) 9개소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015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보건행정과-1845호(2015.2.10)와 관련임.

## I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4조~제9조

## II 금연구역 현황

■ 금연시설 현황 : 27,240개소

(2015. 1월 기준 / 단위: 개소)

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보습학원	어린이 운송용승합차
30	115	2,407	230	13	16	461	1,825	44
사무용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관광 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게임업소	목욕장	음식점
6,347	9	73	36	1,231	45	148	130	14,080

■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 1,136개소 ⇒ 1,146개소

연도	합계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유치원 어린이 집주변	버스 정류소	거리 및 광장	지하철 출입구 주변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마을마당	택시 승차대	기타
총계	1,146	109	79	281	565	4	9	56	10	32	1
2012	344	106		235		2					1
2013	701		79		565	1		56			
2014	91	3		46					10	32	
2015	10					1	9				

## ■ 금연구역 지정 현황

연번	지정일	지정 장소 및 범위	비 고
1	2012.04.01	강남대로 동측 (신 논현역 5번 출구~강남역 12번 출구사이 보도, 870m)	1개소
2		공원전체 (도시공원 2, 근린공원 60, 어린이공원 44)	106개소
3		강남구 청사 및 광장 전체	1개소
4	2012.09.14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코엑스사거리~그랜드인더콘티넨탈호텔입구사이 보도, 836m)	1개소
5	2012.11.02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유치원·어린이집건축물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235개소
6	2013.04.13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보도)	79개소
7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565개소
8		가스충전소·주유소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영업 허가면적 경계선까지)	56개소
9	2014.06.17	대치동 학원가 (은마아파트 입구사거리)주변 3,300m -도곡동길 : "롯데백화점~우성아파트사거리사이 양측보도" -삼성로 :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	1개소
10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유치원·어린이집건축물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46개소
11		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공원3, 마을마당10)	13개소
12	2015.03.05	택시 승차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32개소
13		강남대로 동측 697m[(강남역 1번 출구~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강남역 1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 서울빌딩(강남대로 338)]	1개소
		지하철 출입구 [강남역 12번, 역삼역 1번~8번(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9개소
계			1,146개소

## III 세부 추진계획

### ■ 추진경위

- 지정관련 구민 의견수렴
  - 기 간 : 2015. 1. 21. ~ 30.
  - 대 상 : 구역 내 건물 소유자(21개소), 지하철역장(2개소), 동주민센터
  - 결 과 : 의견 없음
- 행정예고
  - 기 간 : 2015. 2. 10. ~ 2015. 3. 2.
  - 방 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 ■ 지 정 일 : 2015. 3. 5(예정)

### ■ 지정범위

- 강남대로 동측 697m
  - ┌ 강남역 1번 출구~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 142m
  - └ 강남역 1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 서울빌딩(강남대로 338) : 555m
  - ※ 강남대로 동측 870M(신논현역 5번 출구~강남역 12번 출구까지)는 2012.4.1자로 기 지정완료
- 지하철 출입구 9개소 : 강남역 12번, 역삼역 1번~8번(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 지정 위치도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및 강남역 12번 출입구】

【역삼역 1~8번 출입구】

## 금연구역 관리

### ○ 금연구역 계도 및 단속

- 계도기간 : 2015. 3. 5 ~ 5. 31
- 단속개시 : 강남대로(2015.6.1~), 지하철 출입구 9개소(2015.7.1~)

###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 ○ 계도 및 단속반 운영

- 흡연단속원 단속 시행 : 4명(2인 1조)
-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 8명(2인 4조) ⇒ 조례개정 및 위촉 병행추진

※ 추가 확대된 금연구역 집중 계도 및 기존 금연시설(구역) 단속 실시

## 홍보계획

### ○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매 체 : 보도자료 배포, 강남구청뉴스, 문자전광판, 키오스크 등
- 내 용 :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과태료 부과)안내

### ○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일 시 : 2015. 3. 05(목) ~ 5. 29(금) / 계도기간 중 2회 실시
- 장 소 : 강남대로 및 역삼역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 참 석 : 50여명(보건행정과 직원,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 동주민센터와 연계 추진)
- 방 법 : 금연조끼,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배부, 피켓, 가두행진 등 시민의식고취

○ 안내 표지판 등 설치 홍보

- 설치시기 : 2015. 3월 ~
- 설치내용 : 금연마크(세라믹) 등 6종

종 류	장 소	수 량		방 법	비 고
		계	소계		
금연마크 (세라믹)	강남대로(왕래가 많은 위치)	6	6	바닥 (설치공사)	
금연구역경계 바닥표시선 (알루미늄)	강남대로	52	116	바닥 (부착)	
	강남·역삼 9개역 출입구 주변	64			
금연마크 (알루미늄)	강남대로	26	51	바닥 (부착)	
	강남·역삼 9개역 출입구 주변	25			
금연구역 현판(40*40)	강남대로	10	15	시설 (부착)	
	강남·역삼 9개역 출입구 주변	5			
현수막( 700*90)	강남대로	6	10	가로변 (부착)	
	강남·역삼 9개역 출입구 주변	4			
가로등배너 (60*180)	강남대로	25	25	가로등 (설치)	

## IV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20,831,000원(금이천팔십삼만일천원)**
- **예산과목 : 보건행정과, 글로벌 보건 정책 강남 U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금연·절주**
- **계약방법 : 취급 품목에 따라 전자공개수의 및 소액수의**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예산과목	종 류	산출내역	합계	비 고	
시설비 및 부대비	금연마크(세라믹)	6개x484,000원=2,904,000원	2,904,000원	설치비포함	
	금연구역경계바닥 표시선(알루미늄)	116개x55,000원=6,380,000원		9,999,000원	“
	금연마크(알루미늄)	51개x50,000원=2,550,000원			“
	설치비	1인x150,000원=160,000원			
	부가가치세	9,090,000원x1.1=909,000원			
사무관리비	금연구역 현판	15개x35,200원=528,000원	2,328,000원	“	
	가로등배너	25개x72,000원=1,800,000원		“	
행사운영비	현수막	10개x60,000원=600,000원	5,600,000원	“	
	금연거리지정안내 홍보물	10,000부x300원=3,000,000원		“	
	캠페인 행사비	2회x1,000,000원=2,000,000원			
총 계			20,831,000원		

## V 향후계획

---

- 2015. 2. 23 :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수립(방침)
- 2015. 2. 23. ~ 3.4 : 금연구역 지정안내 등 홍보물 제작 발주 및 설치
- 2015. 3. 5 : 금연구역 지정 고시(30일 이상), 보도자료 배포
- 2015. 3. 5 ~ 5. 31 : 금연구역 안내 및 금연 계도
- 2015. 6. 1 ~ : 강남대로 금연구역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 2015. 7. 1 ~ : 지하철 출입구 9개소 주변 흡연단속(과태료 부과)